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진종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880 발의연월일: 2024. 8. 16.

발 의 자:진종오·김용태·박정훈

박충권 · 김형동 · 김태호

김미애 · 강승규 · 서천호

백종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총포의 소지허가에 대해서는 허가 시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함께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검·화약류· 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.

그런데 최근 발생한 '일본도 살인사건'과 같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검 등 흉기를 사용한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검·화 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소지허가 소지허가에 대해서도 정신 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허가의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총포와 마찬가지로 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소지허가에 대해서도 허가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허가의 갱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총포·도

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소지허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등).

법률 제 호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.

제16조의 제목 중 "총포 소지허가"를 "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 전자충격기·석궁 소지허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총포"를 "총 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 항 중 "총포 소지허가"를 "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 석궁 소지허가"로 한다.

제22조제5항제2호 본문 중 "5년마다"를 "제16조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 기·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6조 개정규정 에 따른 허가를 갱신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아 정 제12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 제12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 사기 · 전자충격기 · 석궁의 소 사기 · 전자충격기 · 석궁의 소 지허가) ① 제10조 각 호의 어 지허가) ① -----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・도검・화약류・분 사기 · 전자충격기 · 석궁을 소 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호 및 -----. <단서 삭제> 이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 경우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 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 사기・전자충격기・석궁 소지 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 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 제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 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 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6조(총포 소지허가의 갱신) ① | 제16조(총포・도검・화약류・분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 사기・전자충격기・석궁 소지 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허가의 갱신) ① -----

---총포・도검・화약류・분사

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

야 한다.	<u>기 · 경</u>
② 제1항에 따라 <u>총포 소지허</u>	2 -
<u>가</u> 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	<u>·</u> 화학
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	<u>·</u> 석궁
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	
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	
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	
다.	
③ (생 략)	③ (ক্
제22조(교육의 실시) ① ~ ④	제22조(
(생 략)	(현행
⑤ 총포・석궁의 소지허가 또	<u> </u>
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	
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	
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
2.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:	2
<u>5년마다</u> . 다만, 제47조제2항에	
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에는	<u>청</u>

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을 유

예한다.

<u>기・전자충격기・석궁</u>
② <u>총포・도검</u>
<u>•화약류•분사기•전자충격기</u>
<u>·석궁 소지허가</u>
③ (현행과 같음)
데22조(교육의 실시) ① ~ ④
(현행과 같음)
5
1. (현행과 같음)
2
<u>제16</u> 조에 따른 갱신 신
<u>청 전까지</u>